논 단

개정 공정거래법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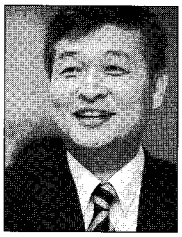

임 영 철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이번의 법개정에서 법집행의 절차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음 번의 법개정에서는 경쟁법 고유의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다듬는 작업에 공정위의 노력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은 2003. 2. 대통령이 시장개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법개정의 단초가 된 대통령의 시장개혁 중장기계획이 개정내용에서 얼마만큼 구현되었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고, 개정법의 내용에서 가장 먼저 필자의 눈에 띄는 것은 절차에 관련된 규정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심사연장기간을 90일로 늘인 것이라든가, 외국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 규정을 신설한 것,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한 것들이 그것인데, 그 내용의 합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법률이 과거의 실체규정에만 관심을 갖던 차원에서 진일보하여 실체적 권한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 특히 행정권한 행사의 자기통제에 관한 세부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법개정에서는 현재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심판절차에서의 대심구조 확보를 위한 절차규정들 중 입법사항들이 법률에 대폭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체규정의 개정내용들을 보면, 상당부분 공정

위의 권한과 규제의 강화에 치우친 감이 있으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무쪼록 공정위의 소관업무가 우리사회에서 이념논쟁이 벌어지는 장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세부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확정개념이나 법률적으로 정확히 정의될 수 있는 개념들만을 사용함으로써 법규의 수범자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으면 한다.

아울러서 다음의 법개정의 기회에는 고유의 경쟁법의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발전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예컨대, 미국의 기업결합심사제도에서의 대기기간은 경쟁당국이 당해 기업결합의 적법성을 일단은 심각하게 문제삼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인데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대기기간 동안 기업결합의 적법성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잘못 설정하고 있는 등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경쟁저널